



제271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008년 6월 26일 (목)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6. 26.
교육사회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심 홍 섭 의원 외 6인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8년 6월 12일
- 회부일자 : 2008년 6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 6. 23 제2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심홍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연학습원 이용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는 “시설사용료” 및 “연수생의 수련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사용·연수신청서”와 “시설사용·연수결정통지서” 서식을 조례에 명시(제6조)
-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또는 단순 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제10조)

III.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

- 동 개정 조례안은
 - 학생(초·중·고·대학)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연학습원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를 현실에 맞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학습원”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수생"이란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학습원에서 자체교육 또는 연수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학습원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계획)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2.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3.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연수신청) ①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생
2. 청소년 단체 회원 및 임직원
3. 일반 직장인 및 사회단체 임직원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단체에서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30명 이상의 인원이 중복신청을 한 경우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기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수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3항의 중복신청을 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조정결과 또는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설사용신청) ① 학습원에서 자연학습, 심신단련,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신청을 한 기관·단체에게는 제반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원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등) 연수 또는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또는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제16조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각 항의 항 번호와 조문은 각각 띄어 쓴다.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 17조제3항 중 “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사용 또는 연수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연수결정통지서

과 정 명					
인 원	명 (남 , 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입 소 시 간			등록장소		
비 용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기 타					
<p>위와 같이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시설을 사용·연수토록 결정 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p> <p>충 청 북 도 지 사 인</p> <p>귀하</p>					

[별표]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제10조 관련)

□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단위 : 1인당/원)

구 분	숙박 (1일)	연수 (1일)	비 고
초 등 학 생	4,700	8,400	식대는 별도 징수
중 학 생	5,000	8,500	
고·대학생	5,300	8,600	
일 반 인	8,000	9,000	

※ 연수 1일은 3식을 기준으로 함

□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숙 박 실	일반실/1박/1인	8,000	18인용/23실
강 의 실	1실/시간	10,000	1실/150석
대 강 당	1실/시간	10,000	1실/300석
운 동 장	1면/시간	10,000	1면
잔디운동장	1면/시간	10,000	3면
야 영 장	1면/1박(텐트설치면적 9 m ²)	10,000	1,637m ²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이하 "학습원" 이라 한다)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삭 제).....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연수생"이라 함은 학습원에서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p> <p>2. "시설사용"이라 함은 학습원에서 자체 교육 또는 연수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p>3.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4. "사용료"라 함은 학습원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연수생"이란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p> <p>2. "시설사용"이란 학습원에서 자체교육 또는 연수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p>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 3조 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4. "사용료"란 학습원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제5조(운영계획)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교육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2.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3.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p>제5조(운영계획)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2.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3.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안
<p>제6조(연수신청) ①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2. 청소년 단체 회원 및 임직원 3. 일반 직장인 및 사회단체 임직원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단체에서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연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도지사는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3명 이상의 연수인원이 중복신청을 한 경우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연수시기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p> <p>④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수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 3항의 중복신청을 조정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자에게 조정결과 또는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연수신청) ①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p> <p>.....</p> <p>.....</p> <p>.....</p> <p>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단체에서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p> <p>.....</p> <p>.....</p> <p>④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수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 3항의 중복신청을 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조정결과 또는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p>
<p>제9조(시설사용신청)①학습원에서 자연학습, 심신단련,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신청을 한 기관·단체에게는 제반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원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시설사용신청) ① 학습원에서.....</p> <p>.....</p> <p>.....</p> <p>.....</p> <p>.....</p> <p>② 제1항에 따라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시설사용료 등)연수 또는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시설 이용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1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p>제10조(시설사용료 등) 연수 또는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또는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